

## 부속서 I

### 코스타리카의 유보목록

#### 주해

1. 이 부속서의 코스타리카 유보목록은 제9.13조(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코스타리카의 기존의 조치를 규정한다.

가. 제9.3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2조(내국민 대우)

나. 제9.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3조(최혜국 대우)

다. 제10.5조(현지주재)

라. 제9.9조(이행요건)

마. 제9.10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또는

바. 제10.4조(시장접근)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관련의무**는 제9.13조(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제3항에 의거 기재된 조치(들)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에서 언급된 의무(들)를 명시한다.

다. **정부수준**은 기재된 조치(들)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라. **조치**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서 인용된 조치는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 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마. **유보내용**은 이 협정 발효일에 자유화에 대한 약속이 있다면 이를, 그리고 유보된 조치의 잔존 비합치 측면을 규정한다.

3. 유보항목의 해석에서, 그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유보항목은 유보가 이루어진 장의 관련 조항에 비추어 해석된다.

가. 조치 요소가 유보내용 요소상의 자유화 약속에 의하여 한정되는 한도에서, 그와 같이 한정된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리고

나. 조치 요소가 그렇게 한정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치 요소와 종합적으로 고려된 그 밖의 요소간의 불일치가 실질적이고 중대하여 조치 요소가 우선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가 아니면,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러한 판단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한도에서 그 밖의 요소가 우선한다.

4. 제9.13조(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조치 요소에 명시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코스타리카가 자국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자국 영역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제10.2조(내국민 대우), 제10.3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5조(현지주재)와 관련하여 이 부속서에서 취하여진 조치에 대한 유보항목은 그 조치의 한도에서 제9.3조(내국민 대우), 제9.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9.9조(이행요건)에 대한 유보항목으로 작용한다.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0.4조(시장접근)는 비차별적 조치를 지칭한다.

7. 본 부속서의 조치 목록은 부속서 II에 따라 해당 조치 또는 그러한 조치의 일부 적용에 적용될 수 있는 향후 청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8. 천연 자원(석탄과 탄화수소를 포함한다)의 채굴, 발전, 원유 및 석유 제품의 정제, 수렵, 임업 및 벌목, 그리고 어업은 본 협정의 목적상 서비스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3284호, 1964.4.30, 상법(Código de Comercio) 제226조</p> <p>법률 제218호, 1939.8.8, 협회법(Ley de Asociaciones) 제16조</p> <p>행정부령 제29496-J호, 2001.4.17, 협회법에 관한 규정(Reglamento a la Ley de Asociaciones) 제34조</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코스타리카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해외 소재 협회 및 코스타리카의 영역 내에 지점을 소유하였거나 개설하고자 하는 외국 법인은, 그러한 지점의 영업을 위해 코스타리카 내에서 위임장을 구성하고 이를 유지할 의무를 지닌다.</p>

2.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6043호, 1977.3.2, 해상-육상 구역법(Ley sobre la Zona Marítimo Terrestre)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31조, 그리고 제3장 및 제6장</p> <p>법률 제2825호, 1961.10.14, 토지 및 간척사업법(Ley de Tierras y Colonización - ITCO INDER) 제2장</p> <p>행정부령 제39688호, 2016.4.22, 국경지역 양허 승인에 관한 규정(Reglamento al otorgamiento de concesiones en franjas fronterizas) 제1장 및 제2장</p> <p>법률 제9221호, 2014.3.27, 해안도시구역 선포 및 육상 구역의 이용 및 활용 제도에 관한 기본법(Ley marco para la declaratoria de zona urbana litoral y su régimen de uso y aprovechamiento territorial) 제1조, 제2조 및 제2장</p>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코스타리카 법규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해상-육상 구역 내에서 진행하려는 어떠한 형태의 개발 또는 활동에 대해서도 양허가 요구된다.<sup>1</sup></p> <p>다음은 해상-육상 구역에 대한 양허를 승인받거나 보유할 수 없다. (가) 5년 이상 코스타리카에 거주하지 아니한 외국 국민, (나) 무기명 주식을 보유한 기업, (다) 해외에 소재한 기업, (라) 외국 국민만으로 코스타리카에 설립된 기업, 또는 (마) 외국인이 자본금 또는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한 기업</p> <p>해상-육상 구역 내에서, 만조선에서 첫 50미터까지의 구역 및 만조선과 만조선 사이의 구역에는 양허가 승인되지 아니한다.</p> <p>해상-육상 구역 내 양허를 소유한 기관 또는 기관의 파트너는 지분이나 주식을 외국인에게 이전하거나 양도하지 아니한다.</p> <p>양허를 소유한 코스타리카 자연인 또는 법인만이 해상-육상 구역 내 관광 개발 또는 그 개발에 대한 접근에 개입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외국 기관의 경우 개발자본이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코스타리카인에게 귀속되는 관광기업에 한정하여 개입이 허용된다.</p> <p>코스타리카 법규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해안도시구역에서 진행하려는 어떠한 형태의 개발 또는 활동에 대해서도 양허가 요구된다.<sup>2</sup> 해안도시구역</p>

<sup>1</sup> 해상-육상 구역은 평균 만조선에서 수평으로 측정된, 코스타리카의 대서양 및 태평양 해안선 전체를 따라 위치한 폭 200미터의 해역을 의미한다. 또한 해상-육상 구역은 코스타리카 영해 내에 위치한 모든 도서(島嶼)를 포함한다.

	<p>내 양허는 도시규제계획 및 법률 제9221호에 명시된 조건에 따른다. 경제적 수요심사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해안도시구역으로 선포되기 전 이미 양허를 소유한 양허권자 및 임시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p> <p>다음은 해안도시구역 내 양허를 승인 받거나 보유할 수 없다. (가) 최소 5년 동안 코스타리카에 거주하지 아니한 외국 국민, (나) 이주자 신분이 합법적이지 아니한 외국 국민, (다) 외국에 소재한 기업, 또는 (라) 외국인이 자본 지분 또는 주식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한 기업. 해당 비율은 양허 기간 동안 유지된다. 해안도시구역 내 양허를 보유한 기업은 지분 구성의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p> <p>사유지 및 적법한 소유권을 보유한 토지를 제외하고, 니카라과 및 파나마와 접한 코스타리카 국경으로부터 폭 2,000미터 이내의 모든 토지는 양도 불가능하며 권리 양도 또는 신고를 통한 취득이 불가능하다. 자연인의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하여 양허를 취득하려는 외국 국민은 코스타리카 영주권을 소유하여야 하며 이민외무총국이 발행한 증명서를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해당 토지에 대하여 양허를 취득하려는 법인은 코스타리카에 거주하여야 한다. 외국 국민이 지분, 주식 또는 자본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 그 법인은 양허를 취득할 수 없다. 외국인이 구성원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법인은 양허를 취득할 수 없다. 외국 국민이 자본을 소유한 법인의 경우, 그 법인은 이러한 자연인이 코스타리카 영주권을 소유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민외무총국이 발행한 증명서를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p>
--	---

<sup>2</sup> 해안도시구역은 도시 지역으로도 간주되는 해안 지역이며, 과거 권한 있는 당국이 해안도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이다.

<b>3. 분야</b>	모든 분야
<b>관련의무</b>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b>정부수준</b>	중앙
<b>조치</b>	법률 제7762호, 1998.4.14,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공공사업 양허에 관한 일반법(Ley General de Concesión de Obras Públicas con Servicios Públicos) 제4장
<b>유보내용:</b>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공공사업계약에 대한 양허 및 코스타리카 법률에 따라 정의된 공공서비스계약을 수반하는 공공사업에 대한 양허의 경우, 고지 원칙에 합치된 선발 기준상 동등하다면 코스타리카 입찰인이 외국인에 우선하여 선정된다. 계약권자는 양허 계약을 체결할 국영 주식회사(sociedad anónima)를 구성할 의무를 지닌다. 또한, 해당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4. 분야	전문직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7221호, 1991.4.6, 농경기술자 전문가협회 기본법(Ley Orgánica del Colegio de Ingenieros Agrónomos)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및 제47조</p> <p>행정부령 제22688-MAG-MIRENEM호, 1993.11.22, 코스타리카 농경기술자 전문가협회 기본법에 관한 일반 규정(Reglamento General de la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Ingenieros Agrónomos de Costa Rica) 제6조, 제7조, 제9조, 제30조, 제31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p> <p>행정부령 제29410-MAG호, 2001.3.2, 감정인 및 조사관의 농경기술자 전문가협회 등록에 관한 규정(Reglamento del Registro de Peritos-Tasadores del Colegio de Ingenieros Agrónomos) 제6조, 제20조 및 제22조</p> <p>법률 제5230호, 1973.7.2, 지질학자 전문가협회 기본법(Ley Orgánica del Colegio de Geólogos) 제3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p> <p>행정부령 제6419- MEIC호, 1976.10.18, 코스타리카 지질학자 전문가협회에 관한 규정(Reglamento del Colegio de Geólogos de Costa Rica) 제4조, 제5조 및 제37조</p> <p>법률 제15호, 1941.10.29, 약사 전문가협회 기본법(Ley Orgánica del Colegio de Farmacéuticos) 제2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p> <p>행정부령 제3503-S호, 1974.2.6, 코스타리카 약사 전문가협회에 관한 일반 기본규정 또는 내부 규정(Reglamento General Orgánico o Reglamento Interno del Colegio de Farmacéuticos de Costa Rica) 제2조 및 제6조</p> <p>2010.10.27, 코스타리카 약사 전문가협회 제약전문분야에 관한 규정(Reglamento de Especialidades Farmacéuticas del Colegio de Farmaceuticos de Costa Rica) 제4조, 제6조, 제9조, 제17조 및 제18조</p> <p>법률 제5784호, 1975.8.19, 코스타리카 치과 의사 전문가협회 기본법(Ley Orgánica del Colegio de Cirujanos Dentistas de Costa Rica) 제2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및 제15조</p> <p>법률 제3663호, 1966.1.10, 엔지니어 및 건축가 연합 전문가협회 기본법(Ley Orgánica del Colegio Federado de Ingenieros y Arquitectos) 제5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및 제52조</p> <p>행정부령 제3414-T호, 1973.12.3, 엔지니어 및 건축가 연합 전문가협회에</p>

	<p>관한 일반 내부 규정(Reglamento Interior General del Colegio Federado de Ingenieros y Arquitectos) 제1조, 제3조, 제7조, 제9조, 제37조의2, 제54조, 제55조 및 제60조</p> <p>2005.3.7, 엔지니어 및 건축가 연합 전문가협회 설립에 관한 특별규정 (Reglamento Especial de Incorporación al Colegio Federado de Ingenieros y Arquitectos) 제7조 및 제8조</p> <p>법률 제1038호, 1947.8.19, 공인회계사 전문가협회 설립법(Ley de Creación del Colegio de Contadores Públicos) 제3조, 제4조, 제12조 및 제15조</p> <p>행정부령 제13606-E호, 1982.5.5, 코스타리카 공인회계사 전문가협회에 관한 규정(Reglamento del Colegio de Contadores Públicos de Costa Rica) 제4조, 제5조, 제8조, 제10조 및 제30조</p> <p>규정 제9호, 2010.5.25, 코스타리카 공인회계사 전문가협회의 설립절차 및 요건에 관한 규정(Reglamento del Trámite y Requisitos de Incorporación al Colegio de Contadores Públicos de Costa Rica) 제3조</p> <p>법률 제3455호, 1964.11.14, 수의사 전문가협회법(Ley del Colegio de Médicos Veterinarios)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및 제27조</p> <p>행정부령 제19184-MAG호, 1989.7.10, 수의사 전문가협회 기본법에 관한 규정(Reglamento a la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Médicos Veterinarios)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9조 및 제24조</p> <p>법률 제2343호, 1959.5.4, 코스타리카 간호사 전문가협회 기본법(Ley Orgánica del Colegio de Enfermeras de Costa Rica) 제2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및 제28조</p> <p>행정부령 제37286호, 2012.4.19, 코스타리카 간호사 전문가협회 기본법에 관한 규정(Reglamento a la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Enfermeras de Costa Rica) 제1조,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5조 및 제158조</p> <p>규정 제2044호, 2011.7.7, 코스타리카 간호사 전문가협회 설립에 관한 규정(Reglamento de Incorporación del Colegio de Enfermeras y Enfermeros de Costa Rica) 제11조</p> <p>법률 제7764호, 1998.4.17, 공증인법(Código Notarial) 제3조 및 제10조</p> <p>법률 제13호, 1941.10.28, 변호사 전문가협회 기본법(Ley Orgánica del Colegio de Abogados y Abogadas de Costa Rica) 제2조,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8조</p> <p>행정부령 제20호, 1942.7.17, 변호사 전문가협회 내부규정(Reglamento Interior del Colegio de Abogados) 제1조</p> <p>협의 제2008-45-034호, 2008.12.9, 변호사의 변호사 전문가협회 설립에 관한 안내서(Manual de Incorporación de los Licenciados en Derecho al Colegio</p>
--	---



	<p>de Abogados) 제2조, 제7조 및 제8조</p> <p>법률 제1269호, 1951.3.2, 자문회계사 전문가협회 기본법(Ley Orgánica del Colegio de Contadores Privados de Costa Rica) 제2조 및 제4조</p> <p>행정부령 제3022호, 1973.5.21, 코스타리카 자문회계사 전문가협회 기본법에 관한 규정(Reglamento de la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Contadores Privados de Costa Rica) 제5조 및 제39조</p> <p>규정 제90-1호, 2004.5.18, 코스타리카 자문회계사 전문가협회의 설립절차 및 요건에 관한 규정(Reglamento para el Trámite y Requisitos de Incorporación al Colegio de Contadores Privados de Costa Rica) 제3조</p> <p>법률 제8412호, 2004.4.22, 화학공학자 및 관련 전문가협회 기본법 및 코스타리카 화학자 전문가협회 기본법(Ley Orgánica del Colegio de Ingenieros Químicos y Profesionales Afines y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Químicos de Costa Rica) 제7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61조, 제67조, 제77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6조 및 제92조</p> <p>행정부령 제34699-MINAE-S호, 2008.4.15, 코스타리카 화학자 전문가협회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화학공학자 및 관련 전문가협회 기본법 및 코스타리카 화학자 전문가협회 기본법(법률 제8412호, 2004.4.22) 제2장에 관한 규정 (Reglamento al Título II de la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Ingenieros Químicos y Profesionales Afines y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Químicos de Costa Rica, Ley No. 8412 del 22 de abril de 2004, Normativa del Colegio de Químicos de Costa Rica) 제2조,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제6장</p> <p>행정부령 제35695-MINAE호, 화학공학자 및 관련 전문가협회 기본법 및 코스타리카 화학자 전문가협회 기본법(법률 제8412호) 제1장에 관한 규정 (Reglamento al Título I de la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Ingenieros Químicos y Profesionales Afines de Costa Rica y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Químicos de Costa Rica, Ley No. 8412) 제1조, 제3조, 제6조, 제8조, 제13조, 제110조, 제111조,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제117조, 제118조, 제119조,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제128조, 제130조, 제145조, 제154조, 제155조, 제156조, 제158조, 제161조, 제17장, 제19장, 제21장 및 제24장</p> <p>법률 제3019호, 1962.8.9, 내과 및 외과 의사 전문가협회 기본법(Ley Orgánica del Colegio de Médicos y Cirujanos)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p> <p>행정부령 제23110-S호, 1994.3.22, 내과 및 외과 의사 전문가협회 기본법에 관한 규정(Reglamento a la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Médicos y Cirujanos) 제10조</p> <p>행정부령 제2613-SPSS호, 1972.11.3, 의학 세부분야 전문가 및 외과 기사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일반 규정 제1조 및 제 4조</p> <p>법률 제7559호, 1995.11.9, 보건학 전문가의 의무사회서비스(Servicio Social Obligatorio para los Profesionales en Ciencias de la Salud)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10조</p>
--	---

	<p>법률 제9272호, 2014.10.7, 법률 제7559호 보건학 전문가의 의무사회서비스(1995.11.9)에 대한 개정(Reforma de la Ley No. 7559, Servicio Social Obligatorio para Profesionales en Ciencias de la Salud, de 9 de noviembre de 1995) - 단일 조항</p> <p>규정 제9호, 2012.9.19, 내과 및 외과 의사 전문가협회가 승인한 의과학 기술자에 관한 규정(Normativa de Tecnólogos en Ciencias Médicas autorizados por el Colegio de Médicos y Cirujanos) 제4조, 제7조 및 제44조</p> <p>규정 제12호, 2007.2.12, 코스타리카 내과 및 외과 의사 전문가협회가 승인한 의과학 관련 전문가 지부에 관한 규정(Normativa del Capítulo de Profesionales Afines a las Ciencias Médicas autorizados por el Colegio de Médicos y Cirujanos de Costa Rica) 제14조</p> <p>법률 제3838호, 1966.12.19, 코스타리카 검안사 전문가협회 기본법(Ley Orgánica del Colegio de Optometristas de Costa Rica) 제6조 및 제7조</p> <p>법률 제4420호, 1969.9.22, 코스타리카 기자 전문가협회 기본법(Ley Orgánica del Colegio de Periodistas de Costa Rica) 제2조, 제24조, 제25조 및 제27조</p> <p>행정부령 제32599호, 2005.6.13, 코스타리카 기자 전문가협회에 관한 규정(Reglamento del Colegio de Periodistas de Costa Rica) 제1조, 제3조, 제47조 및 제48조</p> <p>법률 제7106호, 1988.11.4, 정치학 및 국제관계학 전문가협회 기본법(Ley Orgánica del Colegio de Profesionales en Ciencias Políticas y de Relaciones Internacionales) 제26조 및 제29조</p> <p>행정부령 제19026-P호, 1989.5.31, 정치학 및 국제관계학 전문가협회 기본법에 관한 규정(Reglamento a la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Profesionales en Ciencias Políticas y de Relaciones Internacionales) 제1조, 제10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및 제59조</p> <p>법률 제4288호, 1968.12.20, 생물학자 전문가협회 기본법(Ley Orgánica del Colegio de Biólogos) 제6조 및 제7조</p> <p>행정부령 제39호, 1970.5.6, 코스타리카 생물학자 전문가협회 기본법에 관한 규정(Reglamento de la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Biólogos de Costa Rica) 제2조, 제10조, 제11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p> <p>법률 제9148호, 2013.7.9, 코스타리카 사서 전문가협회 기본법(Ley Orgánica del Colegio de Profesionales en Bibliotecología de Costa Rica) 제3조 및 제5조</p> <p>규정 제0-A호, 2015.2.23, 코스타리카 사서 전문가협회 기본법에 관한 규정(Reglamento a la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Profesionales en Bibliotecología de Costa Rica) 제8조, 제11조 및 제87조</p>
--	--

	<p>법률 제7537호, 1995.8.22, 컴퓨터 및 정보과학 전문가협회 기본법(Ley Orgánica del Colegio de Profesionales en Informática y Computación)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 및 제9조</p> <p>행정부령 제35661-MICIT호, 2009.11.18, 컴퓨터 및 정보과학 전문가협회 기본법에 관한 일반 규정(Reglamento General de la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Profesionales de Informática y Computación) 제1조, 제22조 및 제23조</p> <p>법률 제8142호, 2001.11.5, 공인 통번역법(Ley de Traducciones e Interpretaciones Oficiales) 제6조</p> <p>행정부령 제30167-RE호, 2002.1.25, 공인 통번역법에 관한 규정(Reglamento a la Ley de Traducciones e Interpretaciones Oficiales) 제10조</p> <p>법률 제7105호, 1988.10.31, 경제학 전문가협회 기본법(Ley Orgánica del Colegio de Profesionales en Ciencias Económicas) 제4조, 제6조, 제15조, 제19조 및 제20조</p> <p>행정부령 제20014-MEIC호, 1990.9.19, 코스타리카 경제학 전문가협회에 관한 일반 규정(Reglamento General de Profesionales en Ciencias Económicas de Costa Rica) 제10조, 제14조 및 제17조</p> <p>규정 제77호, 2009.6.20, 코스타리카 경제학 전문가협회 가입에 관한 규정(Reglamento de Admisión del Colegio de Profesionales en Ciencias Económicas de Costa Rica) 제10조, 제12조, 제13조 및 제24조</p> <p>행정부령 제24686호, 1995.9.19, 자문기관의 전문감사에 관한 규정(Reglamento de Fiscalización Profesional de Entidades Consultoras) 제2조 및 제5조</p> <p>법률 제7503호, 1995.5.3, 물리학자 전문가협회 기본법(Ley Orgánica del Colegio de Físicos) 제6조 및 제10조</p> <p>행정부령 제28035-MINAE-MICITT호, 1999.4.14, 물리학자 전문가협회 기본법에 관한 규정(Reglamento a la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Físicos) 제4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8조 및 제21조</p> <p>법률 제8863호, 2010.9.18, 오리엔테이션 전문가협회 기본법(Ley Orgánica del Colegio de Profesionales en Orientación) 제3조, 제4조, 제8조 및 제10조</p> <p>법률 제6144호, 1977.11.28, 코스타리카 심리학자 전문가협회 기본법(Ley Orgánica del Colegio Profesional de Psicólogos de Costa Rica)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p> <p>코스타리카 심리학자 전문가협회 기본법에 관한 규정(Reglamento a la Ley Orgánica del Colegio Profesional de Psicólogos de Costa Rica)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정기총회 제3세션에서 승인됨(1979.3.9)</p>
--	---

	<p>2017.5.20, 코스타리카 심리학 전문가 편입에 관한 규정(Reglamento para la Incorporación de Profesionales en Psicología) 제18조</p> <p>2010.5.26, 심리 전문분야에 관한 규정(Reglamento de Especialidades Psicológicas) 제1조, 제4조, 제5조 및 제18조</p> <p>법률 제8676호, 2008.11.18, 영양 전문가협회 기본법(Ley Orgánica del Colegio de Profesionales en Nutrición) 제2조, 제7조, 제11조 및 제13조</p> <p>협정 제01-2009호, 2009.9.23, 코스타리카 영양 전문가협회 설립에 관한 규정(Reglamento de Incorporación al Colegio de Profesionales en Nutrición de Costa Rica) 제2조, 제3조, 제9조 및 제10조</p> <p>법률 제3943호, 1967.9.6, 사회복지사 전문가협회 기본법(Ley Orgánica del Colegio de Trabajadores Sociales) 제2조 및 제12조</p> <p>행정부령 제26호, 1969.7.15, 사회복지사 전문가협회법에 관한 규정(Reglamento a la Ley del Colegio de Trabajadores Sociales) 제14조, 제66조, 제67조 제69조 및 제70조</p> <p>법률 제7912호, 1999.9.21, 지압사 전문가협회 기본법(Ley Orgánica del Colegio de Profesionales en Quiropráctica) 제7조</p> <p>행정부령 제28595-S호, 2000.3.23, 지압사 전문가협회 기본법에 관한 규정(Reglamento de la Ley Orgánica del Colegio de Profesionales en Quiropráctica) 제5조, 제8조 및 제15조</p> <p>행정부령 제25068-8호, 1996.3.21, 보건학 전문가의 의무사회서비스에 관한 규정(Reglamento de Servicio Social Obligatorio para los Profesionales en Ciencias de la Salud) 제7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및 제22조</p> <p>법률 제8831호, 2010.4.28, 코스타리카 범죄학 전문가협회 기본법(Ley Orgánica del Colegio de Profesionales en Criminología de Costa Rica) 제4조, 제7조, 제8조, 제12조 및 제14조</p> <p>규정 제40010-JP호, 2016.9.12, 코스타리카 범죄학 전문가협회 내부규정(Reglamento Interno del Colegio de Profesionales en Criminología de Costa Rica)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3조</p> <p>법률 제4770호, 1972.10.13, 인문, 철학, 과학 및 예술 학사 및 교수 전문가협회 기본법(Ley Orgánica del Colegio de Licenciados y Profesores en Letras y Filosofía, Ciencias y Artes) 제3조, 제4조 및 제7조</p> <p>규정 제91호, 1999.11.13, 인문, 철학, 과학 및 예술 학사 및 교수 전문가협회 일반 규정(Reglamento General del Colegio de Licenciados y Profesores en Letras y Filosofía, Ciencias y Artes) 제32조 및 제33조</p>
--	--

	<p>규정 제96호, 2008.8.28, 인문, 철학, 과학 및 예술 학사 및 교수 전문가협회 설립에 관한 안내서(Manual de Incorporación del Colegio de Licenciados y Profesores en Letras, Filosofía, Ciencias y Artes)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p> <p>법률 제771호, 1949.10.25, 미생물학자 전문가협회 기본법(Ley Orgánica del Colegio de Microbiólogos) 제2조 및 제8조</p> <p>행정부령 제12호, 1957.9.30, 미생물학자 전문가협회 내부 규정(Reglamento Interno del Colegio de Microbiólogos) 제17조, 제79조 및 제80조</p> <p>행정부령 제21034-S호, 1992.1.28, 미생물학 및 임상화학 서비스 법규에 관한 규정(Reglamento de Estatuto de Servicios de Microbiología y Química Clínica) 제63조</p> <p>법률 제8974호, 2011.8.4, 코스타리카 사회학 전문가협회 설립(Creación del Colegio de Profesionales en Sociología de Costa Rica) 제3조, 제9조, 제30조, 제37조 및 제39조</p> <p>행정부령 제38129-MP호, 코스타리카 사회학 전문가협회에 관한 규정(Reglamento del Colegio de Profesionales en Sociología de Costa Rica) 제3조 및 제8조</p> <p>법률 제8989호, 2011.9.13, 치료사 전문가협회법(Ley del Colegio de Terapeutas) 제8조, 제9조, 제11조, 제37조, 제40조, 제41조 및 제42조</p> <p>행정부령 제37562호, 2013.1.8, 의료 전문분야 및 하위 전문분야에 관한 규정(Reglamento de Especialidades y Subespecialidades Médicas) 제 7조</p> <p>행정부령 제37717-S호, 2013.1.17, 의학 석사 및 박사 학위에 관한 규정(Reglamento de Maestrías y Doctorados Académicos en las Áreas de Ciencias Médicas) 제8조</p> <p>행정부령 제19301호, 1989.11.13, 경력 조산사에 관한 규정(Reglamento de Parteras Empíricas) 제2조</p> <p>금융감독원 규정 제32-10호, 2010.12.3, 외부 감사에 관한 일반 규정(Reglamento General de Auditores Externos) 제5조, 제6조 및 제7조</p>
<p><b>유보내용</b></p>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코스타리카의 각 전문가 협회에 적법하게 소속된 전문직서비스 공급자만이 코스타리카 영역 내에서 자문 및 컨설팅을 포함한 전문직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p> <p>공인회계사, 약사, 지질학자, 엔지니어 및 건축가, 내과 및 외과 의사, 수의사, 변호사, 공증인, 치과 의사, 검안사, 기자, 간호사, 의료 및 수술 기사, 그리고 의학 세부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코스타리카 전문가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는, 자신이 활동 허가를 받은 자국의 관할권 내 동일한 상황에서 코스타리카 국민이 전문직서비스를 수행</p>

	<p>할 수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p> <p>공인회계사, 약사, 지질학자, 사회학자, 농경기술자(임업 또는 농·축산업 감정인 및 조사관을 포함한다), 내과 및 외과 의사, 수의사, 치과 의사, 기자, 의료 및 수술 기사, 의학 세부분야, 컴퓨터 및 정보과학, 그리고 공인 번역사 및 통역사를 대상으로 하는 코스타리카 전문가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는, 가입 신청 시점에 코스타리카 최소 거주 연한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주 신분이 코스타리카 거주자이어야 한다. 최소 거주 연한은 전문가협회마다 상이하나, 통상 2년에서 5년 이내이다.</p> <p>변호사, 공증인, 엔지니어 및 건축가, 간호사, 화학자, 화학 엔지니어 및 관련 세부분야, 생물학자, 사서, 심리학자, 정치학자, 국제관계 전문가, 물리학자, 경제학 전문가, 범죄학자, 과학 및 문학 교수, 그리고 자문회계사를 대상으로 하는 코스타리카 전문가협회에 가입하려는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는, 가입 신청 시점의 이주 신분이 코스타리카 거주자이어야 한다.</p> <p>공인회계사 전문가협회와 내과 및 외과 의사 전문가협회의 설립은 국적 요건의 적용을 받는다. 조산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승인의 경우, 승인 신청 시점에 국적 요건의 적용을 받는다.</p> <p>코스타리카인만이 건축가 및 엔지니어 전문가협회 이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p> <p>해외에 소재한 그룹 또는 복합금융회사의 일부인 기업에 대한 감사의 경우, 그 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감사법인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각 코스타리카 전문가 협회에 해당하는 전문가 등록부뿐만 아니라, 관련 공공규제기관의 등록부가 존재하는 경우 그 등록부에도 등록되고 활동하여야 한다. 나) 코스타리카에 대표사무소를 둔, 국제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자여야 한다.</p> <p>공증인으로서 활동하려면, 코스타리카에 일반인이 이용 가능한 사무실을 보유하여야 한다.</p> <p>농경기술자 전문가협회에 적법하게 등록된 코스타리카 전문직 종사자만이 코스타리카에서 운영되는 농업 과학 분야의 컨설팅 업체에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으며, 이는 총 전문 컨설팅 자문 시간의 50퍼센트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을 준수하기 위함이다.</p> <p>외국 정부 또는 국제 기관의 후원으로 코스타리카에서 진행되는 농업 과학 분야의 컨설팅 또는 자문 업무는 전문가협회에 등록된 코스타리카 국민이 외국 국민과 공동으로 수행한다.</p> <p>외국 기업은 코스타리카 전문직 종사자 또는 코스타리카 사무소를 통한 경우에만 공인회계사서비스를 광고 및 수행할 수 있다.</p> <p>사회학 분야의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 및 약학, 정치학 및 국제관계학 분야의 외국인 전문가는 코스타리카의 전문가협회에서 활동하는 회원이며 코스타리카 국적의 해당 전문직 종사자가 부족하다고 공표된 경우에만 코</p>
--	--

	<p>스타리카 공기업 또는 민간 기업에 고용될 수 있다.</p> <p>외국인 기자는 코스타리카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코스타리카 내의 사건을 보도할 수 있다. 다만, 이 요건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는 기자협회 이사회 의 유효한 허가를 보유한 경우는 제외한다.</p> <p>모든 내과 의사, 외과 의사, 치과 의사, 미생물학자, 약사, 간호사, 영양사 및 심리학자는 보수를 받고 1년간 진행하는 의무사회서비스 요건을 이행하여야 한다.</p> <p>의무사회서비스 이행을 위한 자리는 추첨으로 배정한다. 자리가 충분하여 모든 지원자가 의무사회서비스를 이행할 수 있는 경우, 특정 자리의 배정과 관련하여 코스타리카 국민인 지원자는 외국 국민인 지원자에 대하여 우선권을 갖는다.</p> <p>추첨으로 결정하는 자리의 수가 지원자 수보다 적은 경우, 코스타리카 국민인 지원자에게 추첨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러한 선택권은 자리 선택을 원하지 아니하는 지원자 수가 부족한 자리의 수와 동일하거나 그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추첨에 참여를 원하지 아니하는 코스타리카 국민인 지원자 수가 부족한 자리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자리 추첨에 참여할 대상자를 선정한다.</p> <p>코스타리카 국민인 지원자가 선택을 완료한 이후에도 자리가 부족한 경우, 외국 국민인 지원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절차를 적용한다.</p> <p>상기 명시된 각 전문직 범주에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에 포함된 조건에 따라, 의무사회서비스 요건은 임시 전문직 활동에 대하여 유예될 수 있다.</p> <p>코스타리카 전문직서비스 공급자가 정부 기관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외국인 내과 의사, 외과 의사, 의학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치과 의사는 그러한 정부 기관에 고용된다.</p> <p>청력 관련 기관 소유주는 신분증 또는 법인증명서를 소유하여야 한다.</p>
--	---

5. 분야	육상운송서비스 - 도로화물운송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행정부령 제31363-MOPT호, 2003.6.2, 화물자동차의 중량 및 규모에 따른 도로 순환에 관한 규정(Reglamento de Circulación por Carretera con base en el Peso y las Dimensiones de los Vehículos de Carga) 제69조 및 제71조</p> <p>행정부령 제15624-MOPT호, 1984.8.28, 자동차 화물운송에 관한 규정(Reglamento del Transporte Automotor de Carga Local)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p>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코스타리카 국민 또는 기업만이 코스타리카 영역 내 두 지점 간의 동력화물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해당 기업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 코스타리카 국민이 자본의 51퍼센트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나) 해당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 및 경영권이 코스타리카 국민에게 있어야 한다.</p> <p>외국 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 트레일러 또는 트랙터 트레일러는 코스타리카 영역 내에서 상품을 운송할 수 없다. 이러한 금지 사항은 중미 국가에 등록된 자동차, 트레일러 또는 트랙터 트레일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p> <p>국제 복합 화물 운송에 종사하는 외국 기업의 경우, 코스타리카 내에서 컨테이너 및 트랙터 트레일러를 운송하기 위해서는 코스타리카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6. 분야	관광 가이드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행정부령 제31030-MEIC-TUR호, 2003.1.17, 관광 가이드에 관한 규정 (Reglamento de los Guías de Turismo) 제11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코스타리카 국민 또는 거주자만이 관광 가이드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다.

7. 분야	여행사 및 관광업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이행요건(제9.9조)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5339호, 1973.8.23, 여행사 규제법(Ley Reguladora de las Agencias de Viajes) 제8조</p> <p>법률 제6990호, 1985.7.15, 관광개발장려법(Ley de Incentivos para el Desarrollo Turístico) 제6조 및 제7조</p> <p>법률 제8724호, 2009.7.17, 농촌관광진흥법(Fomento del Turismo Rural Comunitario) 제1조, 제4조 및 제12조</p> <p>행정부령 제24863-H-TUR호, 1995.12.5, 관광개발장려법에 관한 규정(Reglamento Ley de Incentivos para el Desarrollo Turístico) 제18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및 제36조의2</p> <p>행정부령 제25148-H-TUR호, 1996.3.20, 국내외 관광객에 대한 차량 대여 규제(Regula Arrendamiento de Vehículos a Turistas Nacionales y Extranjeros) 제7조</p>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코스타리카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기초하여 코스타리카 내 영업허가를 받은 여행사 수를 제한할 권리를 유보한다.</p> <p>코스타리카는 국제수지에 대한 기여도, 국내 원자재 및 투입물의 사용, 직·간접적인 고용 창출,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 국가 관광 산업의 현대화 또는 다변화, 국내외 관광 수요 증진, 그리고 그 밖의 분야에 반영된 이익을 기초로 하여, 관광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제한할 권리를 유보한다.</p> <p>코스타리카 법률에 따라 코스타리카에서 법인 또는 농촌 자율협동조합의 형태로 설립된 기업만이 농촌 관광 활동(rural community tourism activities)을 진행할 수 있다. 경제적 수요 심사가 요구된다.</p> <p>농촌 관광 분야의 이익과 관련하여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평가하는 경우, 그 기업이 관광 사업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생산된 원자재를 사용하는지의 여부를 고려한다.</p>

8. 분야	운송서비스 - 관세사 - 보조 관세사 - 세관 운송 대리인 - 그 밖의 공공 기능 세관 보조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7557호, 1995.10.20, 관세일반법(Ley General de Aduanas) 제28조, 제29조, 제33조, 제35조, 제40조, 제41조, 제44조, 제46조 및 제49조</p> <p>행정부령 제25270-H호, 1996.6.14, 관세일반법에 관한 규정(Reglamento a la Ley General de Aduanas) 제77조, 제78조 및 제113조</p> <p>행정부령 제38998호, 2015.2.24, 코스타리카의 신뢰 가능한 무역을 위한 세관촉진프로그램에 관한 규정(Reglamento del Programa de Facilitación Aduanera para el Comercio Confiable en Costa Rica) 제2조, 제7조 및 제12조</p>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코스타리카에 법률 대리인 및 본사를 소유한 개인 또는 기업만이 세관 운송 대리인, 국제 화물 대리인, 세관 수탁인 또는 그 밖의 공공 기능 세관 보조의 역할을 이행할 수 있다.</p> <p>코스타리카 국민만이 관세사로 활동할 수 있다.</p> <p>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 지위를 획득하고 「코스타리카의 신뢰성 있는 무역을 위한 세관촉진프로그램(Programa de Facilitación Aduanera para el Comercio Confiable en Costa Rica, PROFAC)」의 혜택을 누리하고자 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코스타리카 관세영역에 소재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 코스타리카 법률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p>

9. 분야	과학, 연구 및 스포츠 서비스 농업, 축산업, 양식업, 벌목업 및 임업 관련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 9.3조 및 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7788호, 1998.4.30, 생물다양성법(Ley de Biodiversidad) 제7조 및 제63조</p> <p>법률 제7317호, 1992.10.30, 야생동물보호법(Ley de Conservación de la Vida Silvestre) 제2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8조, 제39조, 제61조, 제64조 및 제66조</p> <p>행정부령 제32633-MINAE호, 2005.3.10, 야생동물보호법에 관한 규정 (Reglamento a la Ley de Conservación de la Vida Silvestre) 제5장</p>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코스타리카에서 과학 연구 및 생물자원탐사<sup>3</sup> 서비스를 생물다양성<sup>4</sup>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해외 소재 외국 국민 또는 기업은, 코스타리카에 거주하는 법률 대리인을 지정한다.</p> <p>과학적 또는 양식 목적의 종(種) 수집, 과학적 목적의 수렵 및 과학적 또는 양식 목적의 어업에 대해 발급된 면허는 코스타리카 국민 또는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최대 1년간 유효하며, 그 밖의 외국인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유효하다.</p> <p>코스타리카 국민 및 외국인 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외국인보다 낮은 면허 취득 수수료를 납부한다.</p>

<sup>3</sup> 생물자원탐사는 상업적 목적으로 화합물, 유전자, 단백질, 미생물, 그리고 생물다양성에서 발견되는 실질적 또는 잠재적 경제 가치를 지닌 그 밖의 제품에 대한 조직적 탐색, 분류 및 조사를 포함한다.

<sup>4</sup> 생물다양성은 각각의 종(種) 내, 종과 종 사이, 그리고 그 일부로서 존재하는 생태계 내에서의 생물다양성을 포함하여, 육지, 대기, 해양, 수생 또는 그 밖의 생태학적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살아 있는 유기체의 가변성을 포함한다. 또한 생물다양성은 지식, 혁신, 그리고 실질적 또는 잠재적 경제 가치를 지니고 유전적이고 생화학적인 자원과 관련되어 있으며, 지식재산권 또는 독자적인 등록 시스템에 의해 보호를 받는(또는 받지 아니하는) 개별적 또는 집합적인 전통 관습과 같은 무형의 요소를 포함한다.

10. 분야	자유지역
관련의무	이행요건(제9.9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7210호, 1990.11.23, 자유지역 제도법(Ley de Régimen de Zonas Francas) 제 22조</p> <p>행정부령 제34739-COMEX-H호, 2008.8.29, 자유지역 제도법에 관한 규정 (Reglamento a la Ley de Régimen de Zonas Francas) 제71조 및 제13장</p>
유보내용	<p><u>투자</u></p> <p>코스타리카 자유지역에 설립된 기업은 총 매출액의 최대 25퍼센트까지 코스타리카 관세영역에 반입될 수 있다. 그러나, 수출기업 및 서비스기업의 경우 총 매출액의 최대 50퍼센트까지 관세영역에 반입될 수 있다.</p> <p>코스타리카 자유지역에 설립되어, 수출 또는 재수출을 목적으로 비전통적 상품 및 제품을 단순 처리, 재포장 또는 재유통하는 비제조 수출기업의 경우, 총 매출액의 어떤 부분도 관세영역에 반입될 수 없다.</p>

11. 분야	뉴스통신사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행정부령 제32599호, 2005.6.13, 코스타리카 기자 전문가협회에 관한 규정 (Reglamento del Colegio de Periodistas de Costa Rica) 제3조, 제47조 및 제48조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승인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 국적의 기자는 코스타리카 거주자인 경우에만 코스타리카 내의 사건을 취재할 수 있다.</p> <p>기자 전문가협회 이사회는 비거주 외국 국민에게 최대 1년간 코스타리카 내 사건을 취재할 수 있도록 특별 허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이는 기자 전문가협회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상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기자 전문가협회가 코스타리카에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할 예정이거나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협회는 적합한 전문 자격을 보유한 비거주 외국 국민에게 기자가 대표하는 외국 매체를 위해 사건을 취재할 수 있도록 한시적 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한 허가는 사건 발생 이후 최대 1개월 동안 유효하다.</p>

12. 분야	관광 마리나 및 관련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7744호, 1997.12.19, 관광 마리나 및 정박지 양허와 운영에 대한 법률(Ley de Concesión y Operación de Marinas y Atracaderos Turísticos) 제1조, 제5조, 제12조 및 제21조</p> <p>행정부령 제38171-TUR-MINAE-S-MOPT호, 2013. 10. 17, 관광 마리나 및 정박지 양허와 운영에 대한 법률 관한 규정(Reglamento a la Ley de Concesión y Operación de Marinas y Atracaderos Turísticos) 제29조, 제67조 및 제68조</p>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관광 마리나 또는 도크 시설 개발을 위한 양허를 취득하려면, 주사업장이 해외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코스타리카에 설립되어야만 한다. 관광 마리나에 대한 양허 승인은 경제적 수요 심사를 따른다.</p> <p>외국 국민의 경우 충분한 법적 권한을 갖고 코스타리카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p> <p>마리나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외국 선박에는 코스타리카 영해 및 영역에 2년간 체류할 수 있는 허가가 주어지며, 그러한 허가는 2년간 연장 가능하다. 코스타리카 영해 및 영역에 체류하는 동안, 외국 선박 및 그 선원은 수상운송서비스 또는 어업, 다이빙, 또는 그 밖의 스포츠나 관광 관련 활동 등의 이윤 창출 활동을 제공할 수 없다.</p>

<b>13. 분야</b>	수입 및 도매유통 - 원유 및 그 석유제품
<b>관련의무</b>	시장접근 (제10.4조)
<b>정부수준</b>	중앙
<b>조치</b>	법률 제7356호, 1993.8.24, 국영석유공사가 원유, 연료, 아스팔트 및 나프타의 수입, 정제 및 유통에 대한 국가 독점을 형성하는 탄화수소 국가독점법(Ley del Monopolio Estatal de Hidrocarburos Administrado por Recope “Establece Monopolio a favor del Estado para la Importación, Refinación y Distribución de Petróleo, Combustibles, Asfaltos y Naftas”) 제1조, 제2조 및 제3조
<b>유보내용</b>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국가 수요 충족을 위한 원유, 그리고 연료, 아스팔트 및 나프타를 포함하는 석유제품의 수입 및 도매 유통은 국가가 독점한다.



14. 분야	도·소매 유통서비스 - 민간제약회사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5395호, 1973.10.30, 보건일반법(Ley General de Salud) 제96조, 제97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6조, 제112조, 제119조, 제128조, 제132조, 제133조 및 제134조</p> <p>행정부령 제16765호, 1985.12.13, 민간제약회사에 관한 규정(Reglamento de Establecimientos Farmacéuticos Privados) 제3조, 제5조, 제6조, 제20조 및 제27조</p> <p>행정부령 제25493-S호, 1996.8.30, 영업 개시 및 2년 주기 허가 갱신을 위한 제약회사의 보건부 등록에 대한 조항(Disposiciones para la inscripción de los establecimientos farmacéuticos en el Ministerio de Salud, tanto para iniciar operaciones como para renovar el permiso cada dos años) 제1조 및 제2조</p> <p>법률 제7786호, 1998.4.30, 마약, 향정신성 약물, 비허가 의약품, 관련 활동,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에 관한 법률(Ley sobre estupefacientes, sustancias psicotrópicas, drogas de uso no autorizado, actividades conexas, legitimación de capitales y financiamiento al terrorismo) 제2조 및 제38조</p> <p>행정부령 제37111-S호, 2012.1.12, 마약 및 향정신성 약물 통제에 관한 규정(Reglamento para el Control de Drogas Estupefacientes y Psicotrópicas)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21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 및 제50조</p>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마약, 향정신성 물질, 화장품 및 약 성분을 포함한 건강보조식품 등 약품 및 수의약품의 도·소매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은 코스타리카에 설립되어야 한다. 해당 제약회사는 권한 있는 당국의 등록 및 승인을 취득하여야 하며, 그러한 승인은 특정 기간 동안으로 제한된다.</p> <p>모든 민간제약회사는 그 운영을 대리할 수 있는, 제약 분야의 전문직 종사자가 필요하다. 그러한 전문직 종사자는 한번에 하나의 제약 회사만을 감독할 수 있다.</p> <p>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수입과 유통은 경제적 수요심사를 따른다.</p>

<b>15. 분야</b>	도·소매 유통서비스 - 생체의료기기 및 소재
<b>관련의무</b>	현지주재(제10.5조)
<b>정부수준</b>	중앙
<b>조치</b>	행정부령 제34482-S호, 2008.3.3, 생체의료기기 및 소재의 등록, 분류, 수입 및 관리에 관한 규정(Reglamento para el registro, clasificación, importación y control de equipo y material biomédico)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21조
<b>유보내용</b>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생체의료기기 및 소재를 수입, 상업화 및 유통할 경우 관할 보건 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한 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인은 코스타리카에 법률 대리인이 있어야 한다. 생체의료기기 및 소재를 도매 또는 소매로 유통하고자 하는 인은 코스타리카에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p>

16. 분야	해상운송서비스 <sup>5</sup>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104호, 1853.6.6, 상법 제3권 해상 무역(Código de Comercio de 1853-Libro III Del Comercio Marítimo) 제537조 및 제580조</p> <p>법률 제12호, 1941.10.22, 선박등록법(Ley de Abanderamiento de Barcos) 제5조, 제41조 및 제43조</p> <p>행정부령 제12568-T-S-H호, 1981.4.30, 코스타리카 선박 등록에 관한 규정(Reglamento del Registro Naval Costarricense)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p> <p>행정부령 제23178-J-MOPT호, 1994.4.18, 국가등록선박의 공공동산등록부로의 이전(Traslada Registro Nacional Buques al Registro Público Propiedad Mueble) 제5조</p>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코스타리카 국민, 코스타리카 공공기관, 코스타리카에 설립 및 소재한 기업, 그리고 선박회사 대표만이 코스타리카에서 선박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규정은 50톤 미만의 선박을 비상업적 용도로만 사용하고자 등록하는 외국 국민 또는 외국 기업에는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p> <p>코스타리카 내에 한 척 이상의 외국 등록 선박을 소유한 모든 자연인 또는 해외 설립 기업은, 모든 선박 관련 사안에 대하여 공공 당국과의 연락을 담당할 대리인 또는 법률 대리인을 임명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p> <p>코스타리카 항구 간 무역 활동 및 관광객 해상운송 활동은 코스타리카에 등록된 선박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p> <p>코스타리카에 등록된 코스타리카 국적 선박의 선장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외국 국민은, 자신이 지휘하는 선박 가치의 최소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채권을 기탁하여야 한다.</p> <p>코스타리카 항구에 정박하며, 해외 수송 목적으로 사용되는 코스타리카 등록 선박의 승무원 중 최소 10퍼센트는 코스타리카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이는 그러한 훈련된 인력이 국내에서 가용한 경우로 한정한다.</p>

<sup>5</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내 항구 내에서의 해상서비스는 부속서 II의 유보항목 4번(공공서비스) 및 11번(철도, 항만 및 공항)의 적용을 받는다.

17. 분야	항공운송서비스 및 특수항공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최혜국 대우(제9.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5150호, 1973.5.14, 민간항공 일반법(Ley General de Aviación Civil) 제36조, 제37조, 제42조, 제128조, 제143조, 제149조, 제150조, 제156조 및 제172조</p> <p>행정부령 제4440호, 1975.1.3, 코스타리카 항공 등록부 운영에 관한 규정 (Reglamento para la Operación del Registro Aeronáutico Costarricense) 제20조 및 제38조</p> <p>행정부령 제38716-MOPT호, 2014.6.16, 항공기술인력 면허에 관한 규정 - 코스타리카 항공 규정(Reglamento de Licencias al Personal Técnico Aeronáutico, denominado RAC-LPTA Regulaciones Aeronáuticas Costarricenses)</p> <p>행정부령 제31520-MS-MAG-MINAE-MOPT-MGPSP호, 2003.10.16, 농업 항공 활동에 관한 규정(Reglamento para las Actividades de la Aviación Agrícola) 제13조</p> <p>행정부령 제37972-MOPT호, 2013.8.16, 운영 인증서 발급에 관한 규정 (Reglamento para el otorgamiento de certificados de explotación) 제4조</p>
유보내용	<p><u>투자</u></p> <p>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항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증서는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에 발행된다.</p> <p>코스타리카 국민 또는 기업만이 유상 항공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코스타리카 항공 등록부에 항공기를 등록할 수 있다. 비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코스타리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민 역시 항공기를 등록할 수 있다.</p> <p>협정 또는 협약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제 항공운송서비스 공급에 대한 인증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발행된다.</p> <p>농업 항공 활동 개발을 위해 개발 인증서를 취득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그 기업 자본의 최소 51퍼센트를 코스타리카 국민이 소유하여야 한다.</p> <p>모든 공급자 인증서 소유인은 코스타리카 내에 운영 및 유지보수 시설을 두어야 한다.</p>

18. 분야	통신서비스 <sup>6</sup>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코스타리카 헌법(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Costa Rica) 제121조제14항</p> <p>법률 제8642호, 2008.6.4, 통신일반법(Ley General de Telecomunicaciones)-제1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및 제30조</p> <p>행정부령 제34765-MINAET호, 2008.9.22, 통신일반법에 관한 규정(Reglamento a la Ley General de Telecomunicaciones) 제2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21조, 제2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43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6조</p> <p>법률 제8660호, 2008.8.8, 통신부문 공공기관의 강화 및 현대화에 관한 법률(Ley de Fortalecimiento y Modernización de las Entidades Públicas del Sector Telecomunicaciones) 제5조, 제7조, 제18조 및 제39조</p> <p>법률 제7789호, 1998.4.30, 에레디아 공공서비스청 개혁법(Ley de Transformación de la Empresa de Servicios Públicos de Heredia ESPH) 제7조 및 제15조</p>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코스타리카에서 무선서비스는 국가 소유로부터 영구적으로 제외되지 아니하며, 법 또는 한시적으로 부여된 특별 양허에 따라 코스타리카 의회가 규정한 조건 또는 조항의 적용을 받는 공공 행정부 또는 민간 기업만이 이용할 수 있다.</p> <p>코스타리카에서 통신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양허, 승인 및 허가가 필요하다. 그러한 양허, 승인 및 허가를 부여하려면 경제적 수요심사가 필요하다.</p> <p>전통적인 기본전화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코스타리카 의회에서 부여한 특별 양허가 필요하다.</p> <p>코스타리카 전력통신공사에 의하여 설립 또는 인수된 기업 자본에 대한 참여는 최대 49퍼센트로 제한된다.</p> <p>에레디아 공공서비스청은 공법 또는 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과 합작투자 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인이 코스타리카 자본의 최소 51퍼센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p> <p>서비스는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공급되어야 한다. 거주 요건이 적용된다.</p>

<sup>6</sup> 방송을 제외하고,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신호 전송으로 구성된 모든 서비스를 의미한다.

19. 분야	시청각 - 광고 -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및 그 밖의 방송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이행요건(제9.9조) 시장접근(제10.4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률 제8642호, 2008.7.4, 통신일반법(Ley General de Telecomunicaciones) 제1조, 제4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및 제30조</p> <p>행정부령 제34765-MINAET호, 2008.9.22, 통신일반법에 관한 규정 (Reglamento a la Ley General de Telecomunicaciones) 제5조, 제127조, 제128조, 제131조, 제133조, 제134조, 제138조, 제140조 및 제141조</p> <p>법률 제6220호, 1978.4.20, 방송매체 및 광고대행사 규제에 관한 법률(Ley que Regula Medios de Difusión y las Agencias de Publicidad) 제3조 및 제4조</p> <p>법률 제1758호, 1954.6.19, 라디오(무선서비스)법[Ley de Radio (Servicios Inalámbricos)] 제7조, 제11조, 제12조 및 제25조</p> <p>법률 제4325호, 1969.2.17, 국가제작 예술 프로그램의 광고(Publicidad Programas Artísticos de Producción Nacional) 제1조</p> <p>법률 제5812호, 1975.10.10, 외국 연예인 고용 및 조세 규제에 관한 법률 (Ley que Regula Contratación e Impuestos a Artistas Extranjeros del Espectáculo) 제3조</p>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무선서비스는 국가 소유로부터 영구적으로 제외되지 아니하며, 법 또는 한시적으로 부여된 특별 양허에 따라 의회가 규정한 조건 및 조항의 적용을 받는 공공 행정부 또는 민간 기업만이 이용할 수 있다.</p> <p>코스타리카에서 가입에 의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 송신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양허, 승인 및 허가가 필요하다. 그러한 양허, 승인 및 허가를 허용하려면 경제적 수요심사가 필요하다. 그러한 서비스는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공급되어야 한다. 거주 요건이 적용된다.</p> <p>가입에 의한 통합 지상파 텔레비전 시스템의 경우, 양허권자는 코스타리카 영역의 최소 60퍼센트에 해당하는 지역에 방송되며, 일일 최소 송출 요건인 14시간을 충족하고, 그 신호 수신에 관련 규정에 명시된 최소 요건을 충족하고, 수용 가능한 시청률과 해당 송출권을 보유한 코스타리카 텔레비전 채널을 편성에 포함시켜야 한다. 가입에 의한 텔레비전서비스의 경우, 송출된 국영 채널의 광고를 포함하여 어떠한 수정 없이 완전하게 방송될 것이다.</p>

	<p>단독소유기업·개인기업의 형태인 자연인이나 법인 또는 기명 주식을 자본으로 소유한 기업만이 대중매체 및 광고대행사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한 기업은 상업등기소에 등록되어야 한다.</p> <p>무기명 주식을 소유한 주식회사나 외국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매체 또는 광고대행사를 소유한 회사의 주식 및 지분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p> <p>국가 자율 기관 또는 준자율 기관, 코스타리카 공화국 정부 및 국가의 지원을 받는 모든 기관으로부터 후원을 받은 프로그램에 사용된 중간 광고, 스팟 광고 및 촬영 광고는 코스타리카 국민에 의해 제작되어야 한다.</p> <p>영화, 라디오 및 텔레비전에서 방송되는 중간 광고에 출연하는 방송인은 과학기술통신부 라디오국에 등록되어야 한다. 라디오국에 등록하고자 하는 외국 방송인은 코스타리카에 거주하여야 한다. 그러한 방송인이 통신일반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중간 광고의 방송이 승인되지 아니한다.</p> <p>코스타리카에서 제작 및 편집된 경우 중간 광고는 코스타리카의 것으로 간주된다.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중미 국가들에서 제작된 중간 광고 역시 코스타리카의 것으로 간주된다.</p> <p>라디오, 텔레비전 및 영화 프로그램은 다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해외에서 녹음된 시엠송으로 구성된 광고의 경우, 그 광고가 방송될 때마다 일괄 지불하여야 한다.</li> <li>나. 각 텔레비전 방송국 또는 영화관에서 방송되는 하루 광고의 30퍼센트만을 코스타리카 외 지역에서 제작할 수 있다.</li> <li>다. 중미 외의 지역에서 수입한 광고의 경우, 광고 가치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li> <li>라. 해외에서 녹음된 라디오 프로그램 및 라디오 드라마의 수는 각 라디오 방송국에서 하루에 방송되는 총 프로그램 및 드라마 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li> <li>마. 해외에서 촬영 또는 녹화된 프로그램의 수는 하루에 방송되는 총 방송 프로그램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li> </ul> <p>다수의 예술가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에서 고용 가능한 코스타리카 예술가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외국 예술가를 고용 또는 채용한 인은 동일한 공연을 위해 동일한 수의 코스타리카 예술가를 고용하여야 한다.</p>
--	---

20. 분야	주류의 상업화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률 제9047호, 2012.6.25, 알코올 함유 음료에 대한 규제 및 상업화에 관한 법률(Ley de Regulación y Comercialización de bebidas con contenido alcohólico)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및 제9조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주류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연인 및 법인은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그러한 면허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다. 면허는 5등급(가, 나, 다, 라 및 마)<sup>7</sup>으로 분류되며, 5년간 유효하고 동일한 기간 동안 자동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든 판매, 교환, 차용, 양도, 이전, 양여 또는 협상될 수 없다.</p> <p>면허는 다음 기준에 따라 부여된다.</p> <p>가. 관련 도시계획의 조항 또는 이를 대신하여 시행 중인 다른 규정</p> <p>나. 토지 사용에 관한 조항</p> <p>다. 상업의 자유 및 건강권을 포함하여, 편리함, 합리성, 비례성, 합당성, 미성년자의 이익 우선, 그리고 시(市)의 사회적 위험성 및 균형 발전. 이러한 목적상,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부 및 알코올 중독과 약물의존 연구소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p> <p>라. 가급 및 나급 면허의 경우, 최대 주민 300명당 1개의 면허만이 발급될 수 있다.</p> <p>가급, 나급 및 다급 면허의 경우, 주거 전용 구역에 위치한 사업장 또는 도시 계획이나 그 밖의 시행 중인 관련 규정에 따른 사업장에는 발급되지 아니한다. 가급 및 나급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사업장은 공공 또는 사립 교육 기관, 아동 영양센터, 종교 시설, 그리고 노인 요양 센터, 병원, 클리닉이나 기본 통합 건강 관리 센터의 운영 허가를 받은 시설로부터 4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급 허가인 경우, 사업장은 상기 명시된 시설로부터 최소 10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p>

<sup>7</sup> 각 면허 등급의 정의는 법률 제9074호 「알코올 함유 음료에 대한 규제 및 상업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명시되어 있다. 투명성 목적상, 각 면허가 포함하는 활동 및 사업 유형에 관한 간략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 가. 면허 가: 주류 판매가 가능하나 영업장 내 음주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사업
- 나. 면허 나: 주류 판매가 가능하며, 칸티나, 바, 태번, 무도회장, 디스코텍, 나이트클럽, 카바레 등의 영업장 내 음주가 허용되는 사업
- 다. 면허 다: 주류 판매가 가능하며 영업장 내 음식을 곁들인 음주가 허용되는 사업
- 라. 면허 라: 소형 및 대형 슈퍼마켓
- 마. 면허 마: 코스타리카 관광청(ICT)에서 관광객의 편의를 목적으로 지정한 활동 및 기업